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인

2026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한 성 숙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장관 윤 호 중
(법무부 소관)

◉법률 제2199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제15조(미수범)까지”를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미수범)”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피해자를 조사하게”를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에”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담하여 조사하는”을 “전담하는”으로,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을 “피해자(이하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 “조사하거나”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로, “조사 및”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과”를 “검사, 수사기관 및”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자 조사”를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조사”를 각각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를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

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를 “법원, 검사 및”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조사과정”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자를 조사하기”를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수사”를 “수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을 “성폭력범죄 사건을 담당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